

의안번호	2211687
의 퇴 인	김기현 의원
회 답 일	2025. 11. 10.
추 계 번호	25A3974

조선산업 및 조선기술의 진흥을 위한 특별법안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- (일부추계) 제정안에 따라 조선산업의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, 조선 산업에 대한 통계 작성 등을 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 1억 2,000만원, 2031년 8,000만원 등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총 4억 4,000만원(연평균 8,800만원) 이상으로 추계됨
- 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것으로, 제정안의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것임

[표 1]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7~2031년

(단위: 백만원)

	2027	2028	2029	2030	2031	합 계	연평균
조선산업 및 조선기술 진흥계획 등의 수립 및 시행 (안 제5조)	40	—	—	—	—	40	8
조선산업 및 조선기술 관련 동향 등의 조사와 통계 작성(안 제6조)	80	80	80	80	80	400	80
합 계	120	80	80	80	80	440	88

주: 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결과로, 제정안의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것임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5조(조선산업 및 조선기술 진흥계획 등의 수립 및 시행)	○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조선산업 및 조선기술의 진흥계획 등과 관련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조선산업 및 조선기술의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(이하 “종합계획”이라 한다)을 5년마다 수립·시행하여야 함(제1항)	의무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2	안 제6조(조선산업 및 조선기술 관련 동향 등의 조사와 통계 작성)	○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매년 조선산업 및 조선기술에 관한 국내·외적인 동향과 기술개발 현황을 조사하고, 미래 전망 등을 예측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의 수립에 반영하여야 함(제1항) ○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조선산업 및 조선기술의 진흥을 위한 시책의 효율적인 정책 수립·시행을 위하여 통계청장과 협의하여 조선산업 및 조선기술에 대한 통계를 작성·관리하여야 함(제2항)	의무규정
3	안 제7조(조선산업 및 조선기술에 관한 정보의 관리)	○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조선산업 및 조선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관련 정보를 체계적이고, 종합적으로 관리·보급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(제2항) ○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조선산업과 조선기술에 대한 국내외 시장정보·기술정보·경영정보 등 각종 지식과 정보를 수집하여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고 이를 조선기업에 제공할 수 있으며, 조선산업 및 조선기술 관련 정보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 보급을 위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음(제3항)	의무규정 재량규정
4	안 제8조(조선산업 및 조선기술 활성화 전략회의)	○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조선산업 및 조선기술의 경쟁력 강화와 진흥에 관한 사항을 심의·조정, 의결하기 위하여 조선산업 및 조선기술 활성화 전략회의(이하 “전략회의”라 한다)를 둠(제1항) ○ 전략회의에서 심의·의결하는 사항을 사전에 검토·조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략회의로부터 위임된 사항을 다루기 위하여 전략회의에 소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음(제5항)	의무규정 재량규정
5	안 제9조(조선산업 및 조선기술에 대한 지원과 투자)	○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조선산업 및 조선기술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과 투자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함(제1항) ○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조선산업의 신기술로서 「산업기술혁신 촉진법」 제15조의2에 따라 신기술로 인증을 받은 기술(이하 이 조에서 “신기술”이라 한다)의 사업화 등에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·기술적 지원을 하여야 함(제2항) ○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조선산업 및 조선기술 개발에 필요한 시험 설비, 성능검증 등의 실증화 사업,	의무규정 재량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		스마트야드의 구축 또는 전환 및 해외시장 진출 등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고, 「조세특례제한법」 및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등의 조세 감면 조치 등을 할 수 있음(제3항)	
6	안 제10조(연구 개발 사업의 지원 등)	○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조선산업 및 조선기술의 경쟁력 강화와 진흥을 위하여 조선기술과 관련된 연구 개발 사업을 지원하여야 함(제1항)	의무규정
7	안 제11조(세제 및 금융 지원)	○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조선산업 및 조선기술의 경쟁력 강화와 진흥을 위하여 조선산업 및 조선기술과 관련된 사업자 및 연구 개발자 등에 대해 「조세특례제한법」·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등 조세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지원을 할 수 있음(제1항)	재량규정
8	안 제12조(조선산업 및 조선기술 산업단지의 조성)	○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조선산업 및 조선기술의 기반 조성을 위하여 산업단지의 조성 및 공급과 조선산업 기반 시설의 지원 등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, 민간이 공동으로 조선산업 및 조선기술 단지를 조성할 경우에는 우선 지원하여야 함(제1항)	의무규정
9	안 제13조(스마트야드 구축 등의 지원 등)	○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조선산업 및 조선기술 관련 스마트야드의 구축 또는 스마트야드로의 전환(이하 “스마트야드 구축 등”이라 한다)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함(제2항) ○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스마트야드 구축 등을 위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기업, 연구소, 대학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관련된 행정적·기술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(제2항) － 1. 스마트야드 구축 등을 위한 기술개발 및 사업화 － 2. 스마트야드 구축 등과 관련된 신제품·신서비스의 개발 및 출시 － 3. 그 밖에 스마트야드 구축 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○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스마트야드 구축 등의 축진을 위하여 「조세특례제한법」,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등 조세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지원을 할 수 있음(제3항)	의무규정 재량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0	안 제15조(전문인력의 양성)	○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조선산업 및 조선기술의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(이하 “전문인력”이라 한다)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고, 이를 추진하여야 함	의무규정
11	안 제17조(소재·부품·장비 및 공급망 안정화)	○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내 조선산업 및 조선기술 관련 필요한 원자재 및 소재·부품·장비의 안정적 확보와 원활한 공급망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시할 수 있음(제1항). － 1. 국내 소재·부품·장비 및 조선산업 및 조선기술 관련 기업과 국내 수요기업이 공동으로 협업하여 개발하는 연구 개발에 대한 자금 우선 지원 － 2. 국내 소재·부품·장비 및 조선기업이 개발한 제품의 성능을 확인하기 위한 성능검증·인증·실증에 대한 지원 － 3. 공급망 안정품목의 국내 생산시설을 구축하고자 하는 경우 및 재고 확대에 따른 구매 유지 관리, 보관시설 신설 또는 증설 등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보조 또는 융자 － 4. 특정국에 대한 수입 의존도를 완화하기 위하여 국외기업의 소재·부품·장비 사업 부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, 주식 또는 출자 지분 취득 지원 － 5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○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급망 안정품목의 공급망 위기를 신속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·운영할 수 있음(제2항)	재량규정
12	안 제18조(조선산업 및 조선기술의 해외 진출 및 국제협력 추진)	○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내 조선기업이 해외시장에 진출하여 기업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함(제1항) ○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조선산업 및 조선기술에 관한 국제적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을 추진하여야 하며, 관련 기술 및 인력의 국제교류와 국제표준화 및 국제공동연구개발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음(제2항). ○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조선산업 및 조선기술과 관련된 민간 부문에서의 국제협력을 지원할 수 있음(제3항)	의무규정 재량규정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
1	안 제5조(조선산업 및 조선기술 진흥계획 등의 수립 및 시행)	○	—
2	안 제6조(조선산업 및 조선기술 관련 동향 등의 조사와 통계 작성)	○	—
3	안 제7조(조선산업 및 조선기술에 관한 정보의 관리)	X	○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함 — 산업통상자원부는 제정안과 관련하여 조선산업 관련 연구개발사업, 조선산업 및 조선기술에 대한 지원과 투자, 전문인력의 양성, 조선산업 및 조선기술의 해외 진출 및 국제협력 추진 등의 사업을 현재 수행하고 있는데, 제정안에 따라 현행 사업이 확대되거나 신규 사업이 추진될 수 있으나 현시점에서 이를 합리적으로 추정하는데 한계가 있어 추계 대상에서 제외함
4	안 제8조(조선산업 및 조선기술 활성화 전략회의)	X	
5	안 제9조(조선산업 및 조선기술에 대한 지원과 투자)	X	
6	안 제10조(연구 개발 사업의 지원 등)	X	
7	안 제11조(세계 및 금융 지원)	X	
8	안 제12조(조선산업 및 조선기술 산업단지의 조성)	X	
9	안 제13조(스마트야드 구축 등의 지원 등)	X	
10	안 제15조(전문인력의 양성)	X	
11	안 제17조(소재·부품·장비 및 공급망 안정화)	X	
12	안 제18조(조선산업 및 조선기술의 해외 진출 및 국제협력 추진)	X	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제정안과 관련하여 현재 산업통상자원부는 다수의 조선산업 관련 재정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, 제정안에 따라 현행 사업이 확대되거나 신규

사업이 추진될 수 있으나 현시점에서 이를 합리적으로 추정하는데 한계가 있어 일부에 대해서만 추계함

○ 제정안 관련 산업통상자원부의 주요 현행 재정사업은 다음과 같음

[표 2] 제정안 관련 산업통상자원부의 주요 재정사업 현황

(단위: 백만원)

제정안	세부사업(내역)	2022 결산	2023 결산	2024 결산	2025 예산
안 제9조(조선산업 및 조선기술에 대한 지원과 투자)	친환경선박전화대응미세먼지저감성능 평가기반구축	3,000	3,000	6,000	4,740
	중대형선박하이브리드추진시스템육상 실증기반조성	500	3,500	3,150	1,700
	한국형암모니아병커링선박건조지원	—	—	—	500
안 제10조(연구 개발 사업의 지원 등)	조선해양산업기술개발 (조선해양산업핵심기술개발)	33,610	26,508	38,541	66,840
	조선해양산업기술개발 (자율운항선박기술개발)	12,500	12,000	9,120	3,910
	조선해양산업기술개발 (해양플랜트스마트해체기술개발)	1,050	1,050	—	—
	조선해양산업기술개발 (친환경수소연료선박R&D플랫폼구축)	3,550	3,180	—	—
	조선해양산업기술개발 (친환경선박전주기핵심기술개발)	—	—	12,866	23,000
	조선해양산업기술개발 (액체수소운반선상용화기반기술개발)	—	—	4,500	3,375
	IOT함정정비통합관제플랫폼개발	832	1,248	500	1,000
	친환경중소형선박기술역량강화	3,280	5,298	2,533	2,533
	친환경선박용극저온단열시스템실증기 반구축	7,033	5,817	740	—
	안전기반소형수소추진선박기술개발및 실증	2,820	2,688	1,295	3,083
	해양부유쓰레기수거처리용친환경선박 개발및실증	2,180	2,742	1,378	1,378
안 제13조(스마트야드 구축 등의 지원 등)	조선해양산업기술개발 (선박해양의장설계디지털전환핵심기 술개발)	—	—	2482	5000
	조선해양산업기술개발 (선박소부재생산지능화혁신기술개발)	—	—	4216	7270

제정안	세부사업(내역)	2022 결산	2023 결산	2024 결산	2025 예산
	조선해양산업기술개발 (해양모빌리티스마트페인팅시스템기술개발)	—	—	5500	6480
	조선해양산업기술개발 (조선산업생산협업디지털전환기술개발)	—	—	—	3,290
	중소조선스마트생산혁신지원	5,100	4,000	4,000	4,000
	조선해양철의장제조산업디지털전환 (IDX)지원	—	1,235	2,450	2,263
	조선해양기자재디지털협업플랫폼구축	—	400	1,300	1,300
안 제15조(전문인력의 양성)	조선해양미래혁신인재양성센터 (조선해양미래혁신인재양성센터)	—	—	4,800	5,240
	조선해양미래혁신인재양성센터 (조선산업현장전문인력양성)	16,280	8,000	4,000	4,000
안 제18조(조선산업 및 조선기술의 해외 진출 및 국제협력 추진)	해외플랜트진출확대 (조선기자재 및 중소형선박 해외시장개척지원)	4,385	4,416	4,416	3,753

자료: 산업통상자원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- 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제정안 부칙과 사업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으로 함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가. 조선산업 및 조선기술 진흥계획 등의 수립 및 시행(안 제5조)

- 비용추계 대상은 “조선산업 및 조선기술 진흥계획의 수립에 따른 비용”으로 하며, 진흥계획 수립 비용은 5년 주기 연구용역비로 함
- 제정안의 조선산업 및 조선기술 진흥계획과 유사한 연구용역 사례를 고려하여 동 계획의 수립에 4,000만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함
 - － 유사 연구사례로는 「조선산업 시장분석을 통한 경쟁력 강화방안 연구」(산업통상자

- 원부, 2022년, 4,500만원), 「글로벌 선박기자재기업의 성공요인 및 우리 조선산업에 주는 시사점 분석」(산업통상자원부, 2023년, 4,000만원), 「미래형 조선산업으로의 전환 촉진 법안 연구」(한국산업기술진흥원, 2024년, 4,000만원) 등
- 동 계획은 5년 주기로 수립하므로 법 시행 첫해인 2027년에 4,0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가정함

□ 제정안에 따라 조선산업 및 조선기술 진흥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할 경우 향후 5년간 총 4,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

[표 3] 조선산업 및 조선기술 진흥계획 등의 수립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7~2031년
(단위: 백만원)

	2027	2028	2029	2030	2031	합 계	연평균
조선산업 및 조선기술 진흥계획 등의 수립 및 시행(안 제5조)	40	—	—	—	—	40	8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나. 조선산업 및 조선기술 관련 동향 등의 조사와 통계 작성(안 제6조)

□ 비용추계 대상은 “조선산업 및 조선기술 관련 동향 등의 조사와 통계 작성에 따른 비용”으로 함

- 제정안의 통계 작성과 유사한 연구용역 사례를 고려하여 동 조사에 8,000만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함

- 유사 연구사례로는 「해양수산업 통계조사」(한국해양수산개발원, 2023년, 5,048만원), 「환경산업 특수분류체계 및 실태조사 개선방안 마련 연구」(환경부, 2021년, 9,395만원), 「물산업 분류 및 관리체계 개선방안 연구」(환경부, 2021년, 7,900만원) 등

□ 제정안에 따라 조선산업 및 조선기술 관련 동향 등을 조사하고 통계를 작성할 경우 향후 5년간 총 4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

[표 4] 조선산업 및 조선기술 관련 동향 등의 조사와 통계 작성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
2027~2031년

(단위: 백만원)

	2027	2028	2029	2030	2031	합 계	연평균
조선산업 및 조선기술 관련 동향 등의 조사와 통계 작성(안 제6조)	80	80	80	80	80	400	80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V. 부대의견

- 본 비용추계서의 추가재정소요액은 유사 사례를 준용하여 추계한 결과로,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액은 달라질 수 있음
- 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것으로, 제정안의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

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추계세제총괄과	윤주철	권아영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윤주철	02-6788-4655	yjc@nabo.go.kr